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질의응답서

2021. 12. 28.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1-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난이도 및 합격률	1
1-2. 자격시험 문제 출제	1
1-3. 시험 범위	1
1-4. 시험장소 확대	2
1-5. 양성기관 졸업예정자 시험 가능 여부	2
1-6. 과거 졸업자 시험 가능 여부	2
1-7. 진단서 제출 의무	3
1-8. 동물병원 종사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	3
1-9. 코로나 확진자 등 자격시험 방법	4

2. 특례대상자 관련

2-1. 특례대상자 시험 가능 기한	5
2-2. 동물병원 실습 대상	5
2-3. 동물병원 실습 교육 전 준비사항	6
2-4. 동물병원 실습교육 시 보험가입	6
2-5. 실습교육 출석부 업로드 필수 여부	7
2-6. 이수확인증에 원장 서명 가능 여부	7

2-7. 동물보호센터 근무기간 인정	7
2-8. 동물병원 폐업시 증명서 발급방법	7
2-9. 동물병원과 계약서 등 명칭이 상이할 때 조치	8
2-10. 동물병원 명칭 등 변경 시 조치	9

3. 기타사항

3-1. 자격시험 교재	10
3-2. 동물보건사 자격증 미소지자 근무 가능 여부	10
3-3. 동물보건사 배출인원 수급 조절	10
3-4. 일반 학원 교육 및 진료행위 규제	11
3-5. 실습교육 신청 동물병원 연계방법	11
3-6. 전문학교 인정 여부	11
3-7. 평생교육기관이나 사이버대학 자격인증	12
3-8. 동물간호학 등 과목 이수시 특례대상자 여부	13
3-9. 기출 문제	13
3-10. 동물보건사 자격증 미소지자 업무 범위	13
3-11. 제출서류 발급 유효기간	14
3-12.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교수 출제위원 위촉 여부	14
3-13. 응시자격 판정 신청서 제출 의무	15
[참고자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절차 및 방법	16

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Q 1-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난이도는 어느 수준이며, 합격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2년에 처음 시행되는 자격시험으로 난이도 및 합격률을 정할 수 없어 이를 예상하기 어려움

Q 1-2.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하고 누가 출제하는지?

- 동물보건사 시험은 농식품부가 외부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시험 문제를 출제할 계획임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정해 교과목별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이며, 출제위원 선정 등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임

Q 1-3.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 5개 시험과목별(14개 필수교과목으로 구성) 학습 내용(붙임 3 참조)이며, 자격시험 출제 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
- 다만,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는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에 한정됨

Q 1-4. 시험장소 확대 계획은 없는지?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를 개최('21.11.25)하여 시험 운영 경험, 시험 시행 통제 및 필요 인력 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수험자 간격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였음
- 현재 시험장소를 변경할 계획은 없습디만,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시험장소가 변경될 경우, 재공지할 계획임

Q 1-5.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 예정자는 내년도 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

- 수의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21.12.10일자로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예정자('21.12.10일 이후)는 내년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짐

Q 1-6.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의 과거 졸업자는 기본 응시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 '21.12.10일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평가인증일('21.12.10일) 이전에 졸업한 사람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기본응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특례대상자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를 확인 바람

Q 1-7. 자격인정을 위한 공통 제출서류 중 정신과 관련 진단서는 무엇이고 필수적으로 제출 해야하는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 후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는 정신 질환자 및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이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임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동물보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제출서류 중 진단서 제출 기간은 검토 후, 필요 시 연장할 계획임

Q 1-8.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 경력증명 시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만 증명 하면 안되는지?

-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를 종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종사증명서” 제출이 필수사항이며,
- 현행 수의사법 부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례 대상자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동물병원 종사증명서”와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됨

Q 1-9.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자격시험 방법?

- 확진자는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주치의)로부터 응시가 가능함을 확인(의사 소견서 등) 받아야 하고, 자가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시험 시작 전에 지정된 별도 시험장 내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위와 같이 준비된 응시자에 한해 확진자는 병실 또는 생활치료 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자가격리자는 본인의 자동차로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KINTEX)에 마련될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야 함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시험시행일 1일 전 18시까지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과)에 시험 응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유선(044-201-2525) 상담 후, 팩스(044-868-0628)로 신청서 제출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는 자격시험 응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험 시작(10:00) 40분 전(09:20)까지 지정된 시험장 내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특례대상자 관련

Q 2-1. 특례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데 언제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 현행 수의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에 관한 특례는 시행 당시(‘21.8.28일) 해당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적용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계속해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다만, 추후 수의사법 개정 등을 거쳐 특례대상자 유지 기간이 정해진다면 변경될 수 있음

Q 2-2.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서 동물병원 실습이 가능한지?

- (동물병원 미종사자) 양성기관에서 특례대상자에게 연락하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위한 대한수의사회 인정 동물병원”, 자체적으로 업무협약 또는 구두 협의 등에 의해 등재한 협력 동물병원과 연계하여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동물병원 종사자)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리스트 제일 하단 “기타”를 선택하고, 근무 중인 동물병원을 직접 입력하면 됨

Q 2-3.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지 않는 특례대상자인데, 동물병원 실습교육 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 양성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여 현장실습 동물병원을 정해야 함
- 동물병원 현장실습에 관한 세부 문의 사항은 해당 양성기관 관리자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Q 2-4. 동물병원 실습교육 시 보험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 보험가입은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특례대상자의 현장실습을 위한 것으로 별도 개별 보험이 없어 동물병원 현장실습용 보험을 단체가입 형태로 마련하였음
-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사람(미 종사자)은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에서 교육 신청 시 실습교육비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 시스템 관리자가 실습생(동물병원 미종사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실습동물병원명, 실습장소, 실습기간 등의 정보에 근거하여 보험 가입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 이후, “현장실습 보험 청약서 발행안내” 이메일이 실습생에게 발송되며, 실습생이 확인 메일을 회신하면 보험 가입이 완료되고, 정해진 실습기간에 실습을 수행하면 보험을 적용 받게됨 (다만, 실습기간 변경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함)

Q 2-5. 동물병원 실습교육 출석부 업로드가 필수인지?

- 특례대상자가 동물병원 실습교육 출석부를 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님(다만, 필요시 업로드 해야 함)

Q 2-6.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에 원장 서명도 가능?

- 동물병원장의 직인을 원칙으로 하되, 직인이 없다면 원장의 일반 도장 또는 서명도 가능함

Q 2-7. 동물보호센터에서 근무기간도 인정되는지?

- 특례대상자 중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한 현행 수의사법 부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임
- 동물병원이라 함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진료업을 하기 위해 지자체에 신고하여 신고가 수리된 곳이며, 동물병원이 개설되지 않은 동물보호 센터, 수족관, 동물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Q 2-8. 이전에 일했던 동물병원이 폐업했으면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는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폐업한 동물병원 원장의 서명을 받은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동물병원 원장의 직인을 받을 수 없다면, 동물병원 종사 당시 해당 동물병원 관리수의사의 서명도 가능하고,
 - 관리수의사도 없을 경우, 폐업한 동물병원명, 원장 이름, 연락처,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 등을 첨부하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실무위원회에서 판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임

Q 2-9. 실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 가입내역의 근무지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의 근무지(사업자번호)가 실제 일하고 있는 동물병원과 다른 경우,
 - 동물병원장이 발급한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를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동물병원과 동물병원 소속 법인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Q 2-10. 과거에 근무했던 동물병원이 이사 및 병원명 변경으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에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는 경우는?

- 과거 근무지의 동물병원장이 발급한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를 통해 인정할 수 있으나,
-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와 동물병원 명칭 등이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을 보임

3. 기타사항

Q 3-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교재는 별도로 없는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금번에 처음 시행됨에 따라 농식품부가 인정한 자격시험 교재는 없음
- 의학/수의학/간호학 등에서도 면허(자격)시험을 위한 통일된 교재를 통해 교육하는 일은 없으며, 이는 각 양성기관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교육환경에 맞는 교재를 선택하는 것으로 모든 양성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

Q 3-2.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다면 동물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지?

- 현재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동물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의무사항은 아님
- 향후, 동물병원에 동물보건사 의무 고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며, 동물보건사 배출 및 동물병원 수요 등 사회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Q 3-3. 동물보건사 배출 인원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동물보건사는 자격시험으로 동물병원의 수요보다 공급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동물보건사 배출 인원을 조절하기 어려움

Q 3-4. 일반 학원에서 교육 과정 개설 및 진료행위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을 졸업해야 하며, 일반 학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일반 학원에서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할 경우,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Q 3-5.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지 않은 특례대상자인데, 실습교육 신청 동물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 해당 양성기관 관리자는 미종사자를 실습하겠다고 협의된 동물병원에서 특례대상자가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특례대상자와 실습교육 동물병원 간 신속한 연결을 위해 양성기관 관리자 교육 및 협조 요청 등을 조치하겠음
- 다만, 동물병원 현장실습을 위해서는 보험 가입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있어 양성기관 관리자와 협의하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Q 3-6.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 전문학교도 포함 및 인정이 되는지?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1호와 제2조 2호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는 전문 학교를 포함하고 인정하고 있음
- 또한, 전문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전문학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도 포함됨
- 다만, 현행 수의사법 부칙 제2조1호에서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하며, 제2조2호에서는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21.8.28.기준) 해야 함을 반드시 고려 해야함

Q 3-7. 평생교육기관이나 사이버대학 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본응시자) 수의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양성기관으로 평가 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 또는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나, 현재까지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사이버대학 중 평가인증 기관은 없음
-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 2조1호에 따른 특례대상자의 자격요건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졸업한 사람”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 신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Q 3-8. 동물간호학 등의 교육과목을 이수했다면 부칙 제2조 제1호(특례대상자)에 해당 되는지?

-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에 따라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다면 특례 대상자 조건이 될 수 있음
- 본인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교육과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스템(www.vt-exam.or.kr)-정보마당-자료실”에 게시가 되어 있으며, 필요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정 신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Q 3-9. 기출 문제는 제공이 되는지?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2022년도 처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기출문제가 없음

Q 3-10. 동물보건사의 업무가 수의사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이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배출되는 시점에 맞추어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구분할 수 있는 ‘법령 해설집’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 * 1. 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Q 3-11. 자격인정 서류 제출 시 몇 달 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하는지?

- (공통서류 : 진단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실 권장하며, 의사의 진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제출 시 최근 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동물보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부터 진단서 발급까지 소요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제출서류 중 진단서 제출 기간은 검토 후, 필요 시 연장할 계획임
- (개별 서류) 응시자격 인정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라면 발급시점은 제한이 없으나, 가능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을 권장함

Q 3-12. 자격시험 출제위원은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강의 교수님로 구성되는지?

- 동물보건사자격시험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출제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계획이며, 선정 등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임

- 따라서,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강의하신 교수가 자격시험 출제 위원으로 위촉될지 여부는 알 수 없음

Q 3-13. 응시자격 판정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지?

- “응시자격 판정 신청서” 제출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응시자격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 등) 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하면 됨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실무위원회'를 주 1회 개최하여 신청건을 판정 후, 개별적으로 판정 결과를 회신하고 있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절차 및 방법 (요약본)

1.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	2.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3. 응시원서 접수	4. 자격시험	5. 합격 후 조치사항		
				제출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공통서류	개별서류	
<p>일반대상자 (수의사법 제16조의2)</p> <p>①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21.12.10일 이후) * '21.12.27. 기준 14개소 (대전과학기술, 공주, 신구, 중부, 연암, 장안, 수성, 서정, 우송정보, 대경, 전주기전, 부산경상, 연성, 원광대) ※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졸업하였다면 '21.12.10. 이전 졸업자는 일반대상자가 아님 → 따라서, 특례대상자 조건이 충족되는지 개별 확인 필요</p> <p>②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p> <p>③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지고, [붙임1]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p>	<p>해당사항 없음</p>	<p>1. 접수기간 : '22.1.17.(월) 10:00 ~ 1.21.(금) 24:00</p> <p>2. 접수방법</p> <p>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www.vt-exam.or.kr)에 접속 후 회원 가입</p> <p>②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원서접수'</p> <p>③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p> <p>④ 시험안내 및 동의 메뉴에서 '원서접수 유의사항'과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p> <p>⑤ 개인정보 확인(증명 사진 업로드, 주소 입력 등)</p> <p>⑥ 시험장소 확인</p> <p>⑦ '결제' 페이지 이동</p> <p>⑧ 전자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로 이동 후, 수입인지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p> <p>⑨ 접수완료 확인(접수증)</p> <p>⑩ 응시표 출력</p> <p>※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용불가</p>	<p>1. 시험일시 : '22.2.27. (일) 10:00~13:40</p> <p>- 9시 20분까지 입실 - 1교시 : 10:00~12:00 - 2교시 : 12:20~13:40</p> <p>2. 시험장소 - 컨택스 제2전시장</p> <p>3. 시험과목</p> <p>① 기초동물보건학 (동물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영양중보건의학, 반려동물학, 동물보건행동학)</p> <p>② 예방동물보건학 (동물보건응급간호학, 동물병원실무, 의약품관리학, 동물보건영양학)</p> <p>③ 임상동물보건학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보건외과학, 동물보건임상병리학)</p> <p>④ 동물보건윤리 및 법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p> <p>4. 200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p>	<p>① 「수의사법」 제5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정신질환자)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p> <p>② 「수의사법」 제5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p> <p>③ 사진 2장 (가로 3.5cm × 세로 4.5cm)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증명사진으로 대체 가능</p>	<p>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 증명서</p> <p>①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p> <p>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붙임6] ↳ 동물병원장의 직인, 도장, 서명 모두 가능</p> <p>③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p> <p>①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p> <p>②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 증명서</p> <p>②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 증명서[붙임7]</p> <p>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증명서</p> <p>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p> <p>③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p> <p>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 증명서</p> <p>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p> <p>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p> <p>③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p> <p>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 증명서</p>	<p>1.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p> <p>2. 제출방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www.vt-exam.or.kr)에 로그인→메인 화면의 메뉴에서 '나의 시험정보'→관련 서류 업로드</p>
<p>특례대상자 ('21.8.28. 기준) (법을 제16546호 수의사법 부칙 제2조)</p> <p>※ 자신의 최종 학력,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여부, 동물병원 경력 등을 확인하여 특례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p>	<p>특례대상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영상교육 96시간+동물병원 현장 실습 24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여야 자격 시험에 응시 가능('22.2.26. 24:00 이전까지 이수확인증 업로드)</p> <p>① 동물병원 비종사자 -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관리자와 협하여 현장 실습할 동물병원을 정하고, 24시간 실습 교육 완료 후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 [붙임5]'을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에 업로드</p> <p>② 동물병원 종사자 -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동물병원에서 실습 가능(실습교육 후,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 [붙임5] 업로드')</p>	<p>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붙임2]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 판정 방법></p> <p>1. 성적증명서(교과명이 다를 경우, 강의계획서 등 추가 제출 필요)를 발급받아 [붙임2] 교과목의 명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p> <p>2. 일치하는 교과목이 총 20학점 이상되어야 하고, 예방 및 임상 동물보건학에 속하는 교과목을 반드시 1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p> <p>↳ 자신이 [붙임2]의 181개 교과목 외 유사 교과목을 이수하고, 유사 교과목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정 받고 싶을 경우, [붙임4]의 응시자격 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info@vt-exam.or.kr 로 송부</p> <p>②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동물 간호 관련 업무 종사자</p> <p>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동물 간호 관련 업무 종사자</p>	<p>1. 접수기간 : '22.1.17.(월) 10:00 ~ 1.21.(금) 24:00</p> <p>2. 접수방법</p> <p>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 (www.vt-exam.or.kr)에 접속 후 회원 가입</p> <p>② 메인 화면의 상단 메뉴에서 '원서접수'</p> <p>③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p> <p>④ 시험안내 및 동의 메뉴에서 '원서접수 유의사항'과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p> <p>⑤ 개인정보 확인(증명 사진 업로드, 주소 입력 등)</p> <p>⑥ 시험장소 확인</p> <p>⑦ '결제' 페이지 이동</p> <p>⑧ 전자 수입인지 구매 사이트로 이동 후, 수입인지 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p> <p>⑨ 접수완료 확인(접수증)</p> <p>⑩ 응시표 출력</p> <p>※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이용불가</p>	<p>① 「수의사법」 제5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p> <p>② 「수의사법」 제5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p> <p>③ 사진 2장 (가로 3.5cm × 세로 4.5cm)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증명사진으로 대체 가능</p>	<p>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 증명서</p> <p>① 평가인증 받은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p> <p>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p> <p>③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p> <p>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 증명서</p> <p>①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증이나 자격증</p> <p>②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증명서</p> <p>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p> <p>③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p> <p>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 증명서</p> <p>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p> <p>② 동물병원 종사증명서(동물간호 관련 업무 3년 이상 종사)</p> <p>③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서</p> <p>④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 증명서</p>	<p>1. 제출기간 -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p> <p>2. 제출방법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www.vt-exam.or.kr)에 로그인→메인 화면의 메뉴에서 '나의 시험정보'→관련 서류 업로드</p>

붙임 1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인정기준

□ 일반 인정기준

인정분야	세부내용
1. 해당 외국의 제도	(1-1) 외국 학력자에 대한 자국 면허(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할 것 (1-2) 국적에 따른 면허(자격)시험 및 취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
2. 학사운영	(2-1) 국내대학 대비 수업연한이 동일하거나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2-2) 국내대학 대비 최소 졸업학점에 차이가 없을 것 (2-3) 국내대학 대비 교과목별 수업시간에 차이가 없을 것
3. 학사관리	(3-1) 외국인의 (편)입학 절차와 허용 인원 수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하고 있을 것 (3-2) 외국인을 위한 변칙적인 특별과정(특별반)이 없으며, 외국인도 현지 언어로 현지인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할 것
4. 신청자 개인	(4-1) 유학비자를 발급 받는 등 합법적 입학·편입학 과정을 거칠 것 (4-2) 전체 수학한 학기(년)가 해당 학위를 받는데 적절할 것 (4-3)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모두 이수할 것 (4-4)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적합한 학위를 취득할 것 (4-5) 해당 면허(자격)를 취득할 것(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제한하는 단서가 없는 면허 또는 자격)

□ 교육과정 인정기준

최소 수업연한	필수전공 교과목 및 최소 이수학점	최소 실습학점
2년제 대학	① 필수전공 교과목 : 의사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② 최소 이수학점 : 40학점* * 졸업 최소 이수학점은 72학점	18학점

붙임 2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 (181개, '21.12.28. 기준)

과목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181개)		
	기초(90개)	1차 판정(25개)	2차 판정(66개)
기초 동물보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생리학, 동물해부학, 동물해부생리학, 반려동물해부생리(기초,심화), 동물병태생리학 ○ 동물질병학, 반려동물질병학, 특수동물영양및질병관리, 동물질병관리 ○ 동물공중보건학, 공중보건학, 동물공중위생학, 공중위생학, 반려동물공중보건, 반려동물위생관리 ○ 반려동물학, 애완동물및사양관리, 애완동물학, 반려동물생명과학, 반려동물기초 ○ 동물보건행동학, 동물행동및매개치료학, 동물행동교정학, 동물행동심리학, 애견행동교정, 반려동물행동분석학, 반려동물행동교정 ○ 동물보건영양학, 동물사료영양학, 애완동물영양학, 동물영양학, 애견영양및사료학, 반려동물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해부학및실습, 견훈련기초및실습, 반려동물훈련학및실습, 애완동물표준학, 애견훈련기초실습, 애견품종학, 고양양이학, 반려견훈련기초및실습, 반려동물사양및실습, 견종학, 반려동물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이관리학, 공중보건실무, 애견훈련기초, 애완동물학개론, 애견표준학, 애완동물질병학, 동물행동학, 공중보건위생학및실습, 동물행동및애완동물학, 동물영양사양관리학및실습, 애견훈련학및실습, 동물병리학및실습, 동물행동, 동고정학및실습, 응용, 동물훈련, 기초동물훈련, 애견중급훈련, 동물위생및질병, 애완동물관리학, 애견고급훈련, 애완동물훈련실습, 동물훈련실습, 동물기초의학학, 동물실습, 동물기초영양학, 동물해부생리및실습, 반려동물관리학, 기본동물질병학, 동물행동, 과훈련, 애완동물행동심리, 견체표준및훈련, 애완동물사육, 애견훈련응용, 애완동물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건복지및법규, 동물복지및법규, 동물공중보건및법규, 반려동물복지및보건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복지학, 공중보건학및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법규세미나, 동물보건학및법규
예방 동물보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건응급간호학, 응급동물간호, 응급동물수의간호, 응급동물보건 ○ 동물병원실무, 동물병원원무행정(실무), 고객관리서비스실무, 원무관리와보호자교육, 의약품관리학, 원무행정및동물의약품관리, 동물병원코디네이터(기초,실무) ○ 동물약리학, 동물약품기초, 수의약무기초, 수의약리학, 반려동물보건약리, 동물용의약품약전해설, 동물용의약품품질관리 ○ 동물보건영상학, 동물방사선학, 수의방사선학, 수의영상진단간호, 동물영상진단학, 영상진단학개론, 반려동물보건영상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병원실습, 동물임상병리학총론, 동물임상병리학, 동물방사선이론과실습, 동물재활및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화학및실험, 동물병원과관리실무, 임상기생충, 펫샵, 동물병원실무, 수의테크니션실무, 동물방사선실습, 동물영상진단학및실습, 동물병원원무, 동물약품, 응급수의간호및실습
임상 동물보건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건내과학, 동물내과간호학, 동물내과간호학및병원실무, 반려동물보건내과(기초,심화), 동물내과임상병리간호, 반려동물간호학, 동물간호학, 동물간호기초, 기초동물간호학, 동물간호학개론, 동물임상간호학, 입원동물수의간호, 동물간호실무, 동물보건학개론, 동물보건사실무, 반려동물보건(기초,심화), 입원동물보건 ○ 동물보건외과학, 동물외과간호학, 반려동물보건외과(기초,심화), 수술동물보건, 수술동물수의간호, 동물외과영상진단간호 ○ 동물보건임상병리학, 수의임상병리진단간호, 수의임상병리진단보조, 반려동물임상병리진단, 동물임상병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간호기초, 동물수술간호실습, 동물간호외과실습, 동물간호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병리검사, 수의내과간호, 동물간호/치료, 반려동물임상병리, 동물간호실습, 동물간호실습, 호복치학및실습, 동물외과간호, 동물병원간호실무실습, 동물외과간호실습, 동물내과간호실습, 응용동물임상병리및실습, 수의외과수술간호, 수의외과간호, 응용동물간호학, 동물간호기초및실습

※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http://www.vt-exam.or.kr) > 정보마당 > 자료실,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http://www.vt-edu.or.kr) >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각각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최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필수교과목별 학습내용

필수교과목	학습내용
동물해부생리학	1. 동물신체의 기본구조
	2. 뼈대계통의 구조와 기능, 두개골의 구조
	3. 근육계통의 구조와 기능
	4. 신경계통의 구조와 기능
	5.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
	6. 순환계통과 림프계통의 구조와 기능
	7. 호흡기계통의 구조와 기능
	8. 소화기계통의 구조와 기능
	9. 비뇨기계통의 구조와 기능
	10. 생식기계통의 구조와 기능
	11. 내분비계통의 구조와 기능
	12. 공통외피
동물질병학	1. 병리학 개론
	2. 미생물학 개론
	3. 심혈관계 질환
	4. 호흡기계 질환
	5. 전염성 질환
	6. 피부 질환
	7. 소화기계 질환
	8. 근골격계 질환
	9. 내분비계 질환
	10. 비뇨기계 질환
	11. 생식기계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치과 질환
	14. 안과 질환
	15. 기타
동물공중보건학	1. 공중보건의 개념과 동물공중보건의 개념의 이해
	2. 환경보건
	3. 사료 및 식품위생 및 위해요소관리(HACCP)
	4. 역학 및 방역
	5. 전염병의 정의 및 특성
	6. 인수공통전염병의 이해
	7. 세균성 인수공통전염병
	8. 바이러스성 인수공통전염병
	9. 기생충성 인수공통전염병
	10. 진균성 인수공통전염병

필수교과목	학습내용
	11. 국가재난 외래 동물전염병
동물보건응급 간호학	1. 응급동물환자 평가 2. 응급상황별 이해 및 처치 보조 3. 응급실 준비 4. 응급처치의 기본원리 5. 응급동물 모니터링 및 관리 6. 응급약물 관리
동물병원실무	1. 동물병원 실무 서론 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고객관리) 3. 동물병원 마케팅 4. 수의학기록(진료기록부관리) 5. 동물등록제 6. 반려동물 출입국 관리 7. 동물병원 위생관리(환경관리) 8. 동물병원 물품관리
의약품관리학	1. 약리학 기초 2. 약물도포 3. 경구투여 4. 약제관리
동물보건영상학	1. 방사선 발생 원리와 작동법 2.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3. 방사선 촬영준비 4. 촬영 부위에 따른 자세잡기 5. 조영촬영방법 6. 초음파의 원리와 동물환자 자세잡기 및 기기관리 7. CT, MRI 기본원리와 기기관리
동물보건내과학	1. 동물환자의 진료보조 2. 건강검진 절차 및 방법 이해 3. 백신과 전염병 4. 병원 내 검사 보조 5. 외래환자 진료보조 6. 입원환자 간호 7. 중환자 간호 및 통증관리의 이해
동물보건외과학	1. 수술실 관리 2. 기구등 멸균 방법 3. 봉합재료 종류 및 용도 4. 수술도구 종류 및 용도 5. 수술전 준비

필수교과목	학습내용
	6. 수술보조 7. 환자 모니터링 8. 수술후 관리 9. 지혈법 및 배액관 장치의 이해 10. 창상의 관리 및 봉대법 11. 동물재활치료보조
동물보건임상 병리학	1. 동물병원 실습 및 안전과 장비 2. 각종 검체 준비 및 관리 3. 현미경 원리 및 사용법 4. 분변검사 이해 5. 요검사 이해 6. 피부 및 귀검사 이해 7. 배란주기 검사 이해 8. 혈액검사 이해 9. 호르몬 검사 이해 10. 실험실의뢰 검사 종류 및 이해
동물보건 복지 및 법규	1. 동물복지의 개념 2. 생명윤리 3. 동물보호법 4. 수의사법(동물보건사 관련)
반려동물학	1. 반려동물의 정의와 기원 2. 개의 기초와 이해 3. 고양이의 기초와 이해 4. 소형 포유류(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의 기초와 이해
동물보건행동학	1. 동물행동학의 이해 2. 동물의 정상 행동 3. 문제행동의 종류와 접근 4. 문제행동의 관리
동물보건영양학	1. 동물보건영양학의 개념 2. 영양소의 이해 3. 비타민과 무기질 4. 에너지와 물 5. 반려동물의 영양소별 소화 흡수 대사(생리학적 개념) 6. 사양표준 7. 반려동물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 8. 영양과 질병 9. 사료의 종류와 특징

동물병원 실습교육 이수확인증

이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수 실적	이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 시간	시간		
현장 교육 동물병원	동물병원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 실습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동물병원장 직인

동물병원 종사증명서

종사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종사 실적	종사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종사 실적	월 일		
종사 병원	동물병원명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동물병원장 직인

첨부서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종사기간이 비연속적이거나 여러 번 나누어서 종사한 경우에는 ‘종사 기간’ 기재란에 나누어 기재하고, 종사한 동물병원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동물병원별로 1매씩 작성합니다.

제 호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학교 (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명			
	양성기관 평가인증	인증번호	제	호 (인증일:)
이수실적	이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수시간	총 시간(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간, 동물병원 실습 시간)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1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특례 대상자 실습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학교(교육기관)장

직인